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승인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4월 10일 목포시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4월 13일
- 다. 상정일자 : 2001년 4월 19일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본 회 의 : 기획실장 박 철 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기획담당관 문 동 식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시의 회의 심의 의결을 요청함.

다. 주요골자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기정예산액(A)		이월액	불용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합 계	6,146,689	12	402,900	292,757	10	276,460	16,298	110,142
일반회계	3,033,626	11	378,500	270,017	9	253,720	16,298	108,482
특별회계	3,113,063	1	24,400	22,740	1	22,740		1,660

○ 유형별 집행사항

- 구제역 방역 : 1건 8,626천원
- 재 해 대 책 : 7건 81,399천원
- 기 타 : 2건 186,435천원

3.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4. 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특별위원 제3차 회의(2001. 4. 19)
 -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 안전검토 및 심사결정

5. 토론요지

- 2000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은 일반회계 11건, 특별회계 1건, 총 12건에 402,900천원이며, 10건 276,460천원은 구제역 방역, 재해대책, 기타(해수침수 관련 손해배상금과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 차입금 상환)의 건으로 집행하고 불용액은 당초 손해배상금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라고 최종 판결이 나서 남은 금액과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차입금 상환이자 110,142천원임.
- 예측할 수 없는 경비로서 유형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적정하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첨부 1. 2000년도 예비비(일반회계) 지출내역 1부.
2. 2000년도 예비비(교통사업특별회계) 지출내역 1부.